

# 예 산 총 칙

2013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|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   |                | 288,243,054 | 8,647,292 |
| 일반회계   |                | 258,283,441 | 7,748,503 |
| 특별회계   |                | 29,959,613  | 898,788   |
| 기타특별회계 | 기타특별회계         | 29,959,613  | 898,788   |
|        | 상수도특별회계        | 4,030,497   | 120,915   |
|        |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   | 1,097,665   | 32,930    |
|        |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  | 986,757     | 29,603    |
|        |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76,200      | 2,286     |
|        |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    | 223,991     | 6,720     |
|        | 경영(수익)사업특별회계   | 400,000     | 12,000    |
|        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  | 19,615,514  | 588,465   |
|        |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| 3,174,568   | 95,237    |
|        | 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 | 116,005     | 3,480     |
|        | 기반시설특별회계       | 37,907      | 1,137     |
|        | 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   | 58,713      | 1,761     |
|        |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 | 68,510      | 2,055     |
|        | 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 | 73,286      | 2,199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298,21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,088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